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1 - 84호

『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1년 12월 29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조례 제4379호(2010. 1. 18)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 등 필요한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조항은 제14조 위탁 관리 및 운영 조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함(안 제6조)
-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·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)
-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관련 법인·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지원센터 관리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과 수탁자 선정절차, 방법, 위탁관리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(안 제14조)

-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고, 지도·감독에 필요한 규정 및 위탁계약 해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)
-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(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(수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 :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33, 팩스 032-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: ○성 명: ○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)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·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(이하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원센터의 기능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
2. 사회적기업 등의 경영 및 창업지원
3.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
4.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
5. 그 밖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14조(위탁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, 제1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기업 관련 법인·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수탁자 선정절차, 방법,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

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5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6조(위탁계약 해제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2.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
3. 수탁자가 유지관리 및 사용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
4. 공익상 위·수탁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제17조(조세감면)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경영지원 등) ① (생략)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6조(경영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<삭 제>
<신 설>	제12조(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)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·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(이하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<신 설>	제13조(지원센터의 기능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2. 사회적기업 등의 경영 및 창업지원 3.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.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5. 그 밖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4조(위탁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, 제1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기업 관련 법인·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③ 수탁자 선정절차, 방법,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<신 설>	제15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6조(위탁계약 해제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1.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.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. 수탁자가 유지관리 및 사용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 4. 공익상 위·수탁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17조(조세감면)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<신 설>	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	☐ 사회적기업 육성법 ○ 제1조(목적) ○ 제2조(정의) ○ 제10조(경영지원 등) ○ 제11조(시설비 등의 지원) ○ 제13조(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조례 정비대상	
관련자료	☐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☐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사회적기업 육성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·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사회적기업"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.
2. "취약계층"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,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3. "사회서비스"란 교육, 보건, 사회복지,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.
4. "연계기업"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,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·물적·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.
5. "연계지방자치단체"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
제10조(경영지원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·기술·세무·노무(勞務)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(시설비 등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국·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.

제13조(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 및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관 련 자 료

□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

제16조(조세감면)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「지방세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23조(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)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·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24조(지원센터의 기능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
2. 사회적기업 등의 경영 및 창업 지원
3.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
4. 사회적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
5.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25조(위탁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수탁자 선정절차, 방법,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26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27조(위탁계약의 해제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2.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제2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3조(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이하 “사회적기업 등”이라 한다)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남구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
3.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
4.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, 경제업무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사회적기업육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4조(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(이하 “육성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
2.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
3.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4. 사회적기업 등의 재정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제1항의 육성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.

제5조(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)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,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·육성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, 지정절차,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경영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·법률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인천광역시남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홍보 등)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.

1.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
2.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
3. 전문가 포럼,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 보조
-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
 -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초기 설립비 추정
-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(9명) 지원 추정
-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 추정

나. 추계 결과

- 2012년도 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초기 설립비(임대료, 행정장비 지원 등) 200백만원 예상
- 인건비(센터장 1, 직원8) 2012년 100백만원(하반기 기준)
2013년에서 2016년까지 매년 200백만원 소요 예산
- 년차별로 사업비 100백만원, 200백만원, 220백만원, 264백만원, 317백만원 소요 예산 (전년대비 20% 증액)

다. 재원조달방안

- 전액 시비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[붙임1], [붙임2]

4. 작성자 : 경제수도추진본부 일자리창출과장 최종윤

[붙임1]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2년)	2차년도 (2013년)	3차년도 (2014년)	4차년도 (2015년)	5차년도 (2016년)	계
세입							
	소 계						
세출	지원센터 설 립 비	200					
	인건비	100	200	200	200	200	
	사업비	100	200	220	264	317	
	소 계	400	400	420	464	517	
재원 조달							
국 비							
시비	소 계	400	400	420	464	517	
	일반회계	400	400	420	464	517	
	특별회계						
	기 금						
군·구비							
민 간							
기 타							

[붙임2]

비 용 추 계 서

1. 자치법규명 :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

2. 소 요 비 용 : 2,401백만원 소요 (2016년까지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예 산					비 고
	2012	2013	2014	2015	2016	
소 계	400	400	420	464	517	
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비	200					
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인건비 (센터장1, 직원8)	100	200	200	200	200	
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사업비	100	200	220	264	317	

※ 근거자료 : 2011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서를 근거로 작성